

□ 규정 개정 신규대조표

○ 직제규정

현행	개정안
제4조(직급 및 정원) ① 호남진흥원의 직원은 <u>정무직, 별정직, 연구직, 전문직, 행정직</u> 으로 구성한다.	제4조(직급 및 정원) ① 호남진흥원의 직원은 <u>정무직, 연구직, 전문직, 행정직</u> 으로 구성한다.

○ 인사규정

현행	개정안
제17조(연구직의 임용) ① 연구직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1. 수석연구위원 : 5년 2. 책임연구위원 : 4년	제17조(연구직의 임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. 일반연구위원 : 3년</u>
② 연구직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 1. 부서장 직무의 수석연구위원 : 2급 상당 2. 그 외 수석연구위원 : 3급 상당 3. 책임연구위원 : 4급 상당	----- ----- ----- ----- <u>4. 일반연구위원 : 6급 상당</u>
제18조(개방형직위)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·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·변경하려면 미리 <u>위원회의</u>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	제18조(개방형직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사위원회</u> ----- -----
제41조(승진 소요 연수) ①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	제41조(승진 소요 연수) -----

<p>무연한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구직</p> <p>가. 책임연구위원에서 수석연구위원 : 5년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 일반연구위원에서 책임연구위원 : 4년</p>
--	--

○ 직원수당규정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명절휴가비) <u>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,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「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」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9조(연가보상비)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「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7조(명절휴가비) <u>명절휴가비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하여 월액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,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9조(연가보상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용한다.</p>

○ 자산 및 물품관리규정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리) ② 물품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일체의 유체물로 재료, 서화 및 공예품, 차량, 저장품, 부품, 공구, 폐품 등 실사자산으로 내용연수 1년 이상, 단일품목 취득가 <u>10만원</u>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리) 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30만원</u> -----</p> <p>-----</p>